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제언

인권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조만준

충신대학교 강사, 역사철학 전공
mcjon@hanmail.net

- I. 머리말
- II. 북한의 인권 현황
- II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
- IV.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V. 맺음말

한국학중앙연구원현대한국연구소·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7 공동학술회의 “통일의 역설적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다”에서 발표한 「북한인권과 통일교육의 상관성 연구」를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I. 머리말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인권 후진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다양성을 부정하며 주민의 인권을 여러 방면에서 침해하고 있다.¹⁾ 북한은 사회정권의 수립 이후에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 인민의 권리와 ‘공민의 권리로 대체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개입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하지 않은 채 복합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면서 “인권은 국권이며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²⁾ 동시에 북한은 “사회주의와 주체 논리에 따라 근로인민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므로 인권은 별 의미가 없으며 인권이라는 용어가 없어도 개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 위의 예로 미루어보면 북한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에 정의된 인권의 개념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주권이 마치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 일인에 모든 것이 귀속되고 있다.⁴⁾ 한편 지난 6월 오토 프레더릭 워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22)의 사망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개탄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탄압, 탈북자 인신매매, 제3국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2017년 7월 북송위기 탈북민 일가족 5명 중국 선양에서의 집단자살,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비무장 병사와 그의 등 뒤에서 무차별 난사하는 북한군의 잔인함 등은 북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우선정책(Human Rights

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통일교육원, 2017), 254쪽.

2) 승재순·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3) 북한은 헌법 제4조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 헌법 제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 법제)』(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b), 48쪽.

4)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사회과학출판사, 1985), 27쪽.

Priority Policy)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위상 재고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권은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등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오늘날 보편적(universal)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imprescriptible or inviolable)으로,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⁵⁾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의 실체와 적용에 관한 연구(김동환, 서병선, 이무철, 장명봉), 인권의 대북 접근 방식에 관한 시각차 연구(서병선, 김국신, 김창근, 정경환), 북한의 인권 침해 현황과 사례 연구(임예준, 한동호, 통일연구원), 국제인권레짐에 대한 연구(김수암, 강명옥, 김은옥),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개입의 방향과 방법성에 대한 연구(김부찬, 서보혁, 백범석)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의 갈등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고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소통의 창구를 찾아보는 데 의미를 둔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북한의 인권문제를 기술하면서 통일과정으로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노력들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적 대안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인권 문제는 생존과 자유, 사회권 보장의 민주주의의 측면으로 확대되어 분단과 안보, 민주화, 인도적 개입, 통일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이 곧 통일을 이루는 길⁶⁾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은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민족의 분단이 70년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5) 김창근,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인권관: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96(2014), 208쪽.

6)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의 상관성 연구」, 『통일전략』 15(2015), 52쪽.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젊은 세대는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과 무수히 남아 있는 과제가 함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북한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 당국 스스로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사실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위한 보완점이다. 다음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차례대로 제시할 것이다.

II. 북한의 인권 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북한헌법) 서문은 북한을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사회주의 조국으로 명시하고 있다.⁸⁾ 북한헌법은 총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수령-당-대중이 일심 단결되어 모든 인민이 참다운 인권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제시한다. 북한은 집단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방식을 배제하며, 사회주의 체제이기에 서구식 인권의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⁹⁾ 김강녕(2003)은 “북한의 수령은 단결권과 통치의 중심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⁰⁾ 다음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7)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약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주화,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통일연구원, 2017)(kinu.or.kr, 검색일: 2017년 9월 25일).

8)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북한법령연구』(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a), 25쪽.

9) 이무철, 「북한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현대북한연구』 14(2011), 148쪽.

10) 김강녕·최이조,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3(2003), 14쪽.

1. 집단주의적 개념에 기초한 인권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개념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권리를 강조한다. 북한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인권을 주장한다. 이것은 서방의 다원주의와 양립되는 것으로 우리식 사회주의가 집단주의에 기초한다고 전제하면서, 인민 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사상에서는 자유화, 정치에서는 다당제, 소유에서는 다양화라는 다원주의의 특징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¹⁾ 북한은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며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유교의 가부장적인 전통을 중시한다. 북한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통해 집단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사고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인권은 개인의 천부적 권리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의무수행이나 사회주의 건설의 강화에 기여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사회가 무너질 때 실업, 가난, 범죄로 인해 인권은 유린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인권의 본질은 범죄와 사회악을 막는 것이다. 북한이 바라보는 집단주의적 인권의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비록 북한이 유엔이 정한 인권규약에 가입은 하고 있으나 번번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문화상대주의에 기초한 인권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체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북한은 문화상대주의에 기초해 체제의 문제로 인권을 인식한다. 북한의 체제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은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바라보는 마르크스의 견해와 계급주의로 설명하는 레닌의 시각을 선별적으로 차용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의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¹²⁾

11) 김창근(2014), 앞의 논문, 220쪽.

12) 김국신·김연수, 「북한개방화와 인권 개선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0

리현도는 《로동신문》에서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인권의 의무”라고 제시했다.¹³⁾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는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할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내용과는 뚜렷한 차이를 갖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¹⁴⁾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체제 안보와 현실적 필요성의 두 가지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식 인권은 1990년 중반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개념이다. 북한은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의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에서 우리 식 인권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¹⁵⁾ 《로동신문》은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인권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인권론이며 올바른 가치관과 생명관에 기초한 과학적인 인권론”이라고 언급했다.¹⁶⁾ 《로동신문》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 기준과 보장 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명시했다.¹⁷⁾

《로동신문》의 사설을 보면 북한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다만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인권 기준만을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설정하였다. 2010년 3월 21일 《로동신문》에서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 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상 차이가 있고 경제, 문화발전 수준과 지향이 각이한 조건에서 나라마다 인권 기준이 다르기 마련이다”라고 강조했다.¹⁸⁾ 북한은 인권의 기준이 나라의 조건과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로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문화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권의 상대성과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으로 대응한다. 북한은 인권의

(2010), 80쪽.

13)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자.

14)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제적 대응」, 『통일전략』 5(2005), 16-17쪽.

15)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16)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17) 《로동신문》, 2001년 3월 1일자.

18)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자.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동시에 국내법 정비를 통해 선택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선택하는 ‘이중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국가주권의 기초로서의 인권

북한은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을 강조한다. 북한의 인권은 민족의 자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북한은 자주권을 북한헌법 제1조에서 강조하면서 주체사상과 결부시켜 전 영역에 걸쳐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²⁰⁾ 북한은 모든 국가는 민족 자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권은 국가의 자주권 문제임을 주장한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인권 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로 인권의 첫째기는 원쑤”라고 비난한다.²¹⁾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개입은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²²⁾ 인권 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²³⁾ 북한은 진정한 인권이란 인민들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할 때 실현되는 것으로 인권은 국가의 주권이라고 강조한다. 《로동신문》은 인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력사와 현실은 인민 대중의 인권을 지키자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 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 수 없고 국권을 잃으면 인민 대중도 인권을 유린당하게 된다.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없다. 그런데도 제국주의자들은 인권 옹호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인권을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

19) 김동한, 「햇볕 정책과 북한의 인권」, 『한양법학』 21(2007), 139쪽.

20) 김동한, 「北漢의 人權과 法」, 『北韓法研究』 제8호(北韓法研究會, 2005), 265쪽.

21) 김동한(2005), 위의 논문, 265쪽.

22) 정영철·손호철,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인권문제」, 『현대정치연구』 7(2014), 276쪽.

23) 통일교육원(2017), 앞의 책, 263쪽.

가치이며 인권에 대한 간접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강도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흑백을 전도한 논리이다.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욱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상품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가 자기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담보 보장해줄 때 실현된다. 인권이자 국권이며 국권이자 자주권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²⁴⁾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 원칙과 주권 우선을 이유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자주권을 주장하고 국제 규약에 가입했지만 규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인권문제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점차 고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속되는 재난과 경제적 악화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인권 침해국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단계적으로 호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²⁵⁾ 비록 북한이 법 체제의 정비를 통해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반영해오고는 있지만 북한 고유의 인권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I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 여러 형태로 북한을 지원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시작되었다.²⁶⁾ 많은 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북하고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24)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25) 더 자세한 사항은 통일연구원에서 2017년에 발행한 『2017 북한인권백서』를 참조하라. 『2017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연구원 편, 『2017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17)(kinu.or.kr, 검색일: 2017년 9월 30일).

26) 강명옥,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2006), 16쪽.

정착하면서 많은 인권문제 및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탈북자들에게 의해 감추어졌던 북한 내부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그 정보나 관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유엔을 통한 인권 메커니즘

유엔의 인권제도는 헌장에 기반한 기구(Charter-based bodies, 이하 헌장기구)와 조약에 기반한 기구(Treaty-based bodies, 이하 조약기구)로 나누어진다.²⁷⁾ 2000년대 들어 유엔은 대규모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책임성 문제를 다루는 조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임무(mandate)는 부여받은 위임사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권 침해 사례를 심층으로 조사한 후 보고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²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김수암(2013)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고 제시했다.²⁹⁾

27) 유엔헌장의 인권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문제를 다루는 헌장기구는 총회와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특별절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이다. 조약기구는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구로서 규약위원회이다. 헌장기구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약기구는 해당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이 그 조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별 대표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인권 상황을 심의하기에 전문성이 있고 비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김은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2016), 52-54쪽.

28) 백법석·김유리, 「북한인권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2014), 52쪽.

첫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 국가가 많아지고 반대 및 기권국가도 감소했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해 공감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2013년도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실과 책임문제가 규명되었다.

셋째,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하면서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의무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특히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립을 계기로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도에 반한 죄'에 이르는 사안의 책임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① 식량권 침해, ② 정치범 수용소 관련 인권 침해, ③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④ 자의적 구금, ⑤ 차별, ⑥ 표현의 자유 침해, ⑦ 생명권 침해, ⑧ 이동의 자유 침해, ⑨ 타 국민의 납치와 강제실종문제 등이다.³⁰⁾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이 2013년 보고서에서 적시한 9가지의 인권 침해 사안을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1년간의 활동을 거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3월 17일 제25차 인권이사회에 두 편의 서면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한국, 영국, 일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수십 명의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한 청문회와 인터뷰, 면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층의 정책 및 결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³¹⁾ 안보리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29) 김수암, 「북한인권개선과 행복한 통일 여건 조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3), 132쪽.

30) 통일연구원(2017), 앞의 책, 3쪽.

31) 김부찬,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19(2015), 58쪽.

Court, ICC)에 회부했다.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³²⁾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히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최고위층의 개인 책임을 제시했다. 2014년 1월 20일 북한에 보낸 서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록 인도에 반한 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적절한 사전예방 및 명령지휘 책임원칙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주민 보호 책임의 이행에 명백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강조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보완되어왔다. 무엇보다 유엔의 제도들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제도별 실천성이 강화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 체제로 전환되고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그 범위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왔다. 유엔총회는 인권침해국인 북한정권에 대해 수사적 차원의 비판이 아닌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제시하면서 외교적 압박 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찬성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공감하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유엔 산하 인권기구들의 권한은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엔 인권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협력력을 통해 인권 탄압 국가에 대한 도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구속력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도덕적·외교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은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지만 인권 침해 국가에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규범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제도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기술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32) 강명욱(2006), 앞의 논문, 82쪽.

2. 개별국가의 다양한 활동: 유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국제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실제적 문제 상황을 해소하면서 접근하고 있다.³³⁾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각종 조약과 결의, 법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존중”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제3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guidelines)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제3국 또는 지역적 그룹들과 인권과 관련된 대화(human rights dialogue)를 추진하고 있다.³⁴⁾

미국은 유엔을 통하지 않고도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4년 최초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보혁(2016)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 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³⁵⁾

- 첫째, 북한의 원조와 관련하여 북한정부의 인권 보호 조치와 연계시켰다.
- 둘째,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
- 셋째,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의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체제의 완전한 전환(complete transformation)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 탈북자의 합법적인 정착을 위해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국무부 예산과 전미민주주의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의 재정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일본에서도 북한인권 관련법이 초당적으로 제정되었

33)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New York, Chichester, West Sussex: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 127.

34) EU Official Document,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the European Union's External Relations, available at <http://ec.europa.eu/comm/externalrelations/humanrights/intro/index.html>(검색일: 2017년 10월 7일).

35) 서보혁,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 비교 연구」, 『담론 201』 19(2016), 67쪽.

다.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은 2006년 “납치문제와 그 외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제출했다.³⁶⁾ 그리고 그해 6월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한 후 23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당안을 토대로 민주당이 제안한 탈북자 지원 등의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⁷⁾

첫째, 정부가 납치 문제의 개선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

둘째, 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한다.

셋째, 정부는 재량권을 가지고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경제제재 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제8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 “특정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년 법률 제125호 제3조 제1항 6)에 규정된 조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쇼와 24년 법률 제228호 제10조 제1항 7)에 규정된 조치” 등을 이용해 제재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상정할 때부터 인권법이 라기보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되었다.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2016년 11월 15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도 거부했으며, 2014년 이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인권결의안의 배후에는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가 놓여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중국 내의 인권 침해도 계속되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중국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인신매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을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동조를 넘어서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3. 한국 정부의 노력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

36) 서보혁(2016), 위의 논문, 68쪽.

37) 서보혁(2016), 위의 논문, 68쪽.

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표명하였다. 2008년부터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인권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인권 단체들이 많아지면서 보수 단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일부 진보단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를 압박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국내 여론을 범국민적 관심사로 확산시키고 있다.³⁸⁾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각각 진보와 보수의 시민단체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며,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생존권 보장, 인도적 지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³⁹⁾ 특별히 2005년 12월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한 인권단체들을 통해 북한자유주간, 북한인권법 주간 등의 행사가 한국과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 논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와 맥을 함께하면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제정되었다. 국내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여러 논란 속에 강도 높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규탄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강화되면서 통과되었다.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갈등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묶어둘 수만은 없다는 주장에 진보와 보수가 모두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아울러 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는 대북정책의 굴레로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독립시키게 되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일관되고 투명한 운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38) 이상신, 「북한 인권과 NGO: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변화 과정」, 『통일과 법률』 4(2010), 94쪽.

39) 통일부에 등록된 통일관련 단체의 역할과 목표, 활동사항 등은 조만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개혁신학의 과제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60-63쪽을 참조하라.

4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통일연구원, 2016), 67쪽.

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분단의 당사자로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엔이나 다른 개별국가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 전환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인식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여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각 부처 간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유대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⁴¹⁾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국제적 인권 협력 방안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2018년 1월 현재 북한인권재단은 정치적인 여야의 갈등과 기타 제반사항으로 인해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지원과 연대, 협력이 단순한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닌 인권의 보편성을 위한 큰 그림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IV.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미흡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 정확한 인권 피해 현황을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 방위적으로 북한인권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각 영역—정부, 학교, 사회, 가정 등—에서 통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제도적·정치적·사회적 통일을 넘어서 보편적 가치인 사람과 문화와 가치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준비가 통일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통일 의지에

41) 한승호·이윤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4(2016), 125-126쪽.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통일은 과정으로 실제적인 교육 현장의 변화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다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실현과 통일교육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시대 영합적인 가치가 아니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와 사랑, 인권 등은 주어지거나 발견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역사를 통해 주어진 보편적 가치이자 체험의 결과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인권, 생명의 존엄성, 자유는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가치이다. 인권은 개인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누려야 할 존재이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인권의 가치는 북한의 주장처럼 문화상대주의에 기초하여 집단주의에서만 정당화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북한 주민들도 누구나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누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삶에도 개인의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보편적 가치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지배구조나 문화, 집단이 있다면 비판하고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방법적 논의들이 필요하다.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을 명분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며 평화를 명분으로 인권의 침해가 용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들 누구나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가 문화적인 특수성과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지니는 보편성과 당위성의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이 갖는 역사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성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자유와 생존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한다. 한반도의 민족사적이고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의 현실과 실체를 보다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분단으로 인한 적대감과 불신감을 극복하고 신뢰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자유를 억압하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그 어떤 운동이나 사조, 질서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⁴²⁾ 통일교육은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도록 폭넓은 시야를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넘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통일의 공감대를 함께할 수 있는 통일 경험(Unification Experience)의 배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박주화(2017)는 “분단으로 인한 손실과 미래 통일로 인한 삶의 변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자”고 강조했다.⁴³⁾ 통일교육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접근은 정치적·제도적 문제 이전에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고 자유와 인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기본 가치로 인식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여와 통일교육

북한의 패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 주민 개인의 인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의 역량과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로운 관여이다. 북한과 통일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우리 사회 안에도 정치와 이념, 진보와 보수, 정부와 개인, 지역과 세대의 분열을 경험한다.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상이한 논란과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나와 맞지 않는 다툼과 분열이 공동체에 존재할지라도 더욱더 많은 대화와 소통, 섬김과 나눔으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한정된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교육은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구성원의 인식의 함양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성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42) 정경환, 「학교통일교육의 기본인식과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4(2014), 181쪽.

43) 박주화(2017), 앞의 책, 7쪽.

저변확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유대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관점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지혜로운 비판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의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고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바람직한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타자와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범위를 넓혀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념으로 지혜를 모으고 관심을 확장시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와 협의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 학교와 가정 등 삶의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통해 느낀 점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일의지를 확산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폭력적인 인권 유린의 참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의 촉구를 요구해야 한다. 정경환(2011)의 언급처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의 행위들, 반인권적인 실태를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⁴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감상적인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관여 형태와 제도적인 노력들을 알리고 국내의 북한인권 변화를 위한 개선 의지와 정책을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변화와 정책에 주목하면서 통일한국이 가져다줄 이익이 주변 열강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노력과 그동안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되 획일화되고 단선적인 접근을 피해야 한다. 자칫 성급하고 낙관론적인 통일 미래의 청사진을 배제하고

44) 정경환, 「북한강제수용소 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11(2011), 9쪽.

감상적인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 사실과 실제에 기초한 통일 인식의 전락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 사회의 소통 창구를 확립하며 협력과 대화를 위한 상생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도적인 개입의 정당성 논의나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넘어서 인권 이념의 확대를 위한 논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받아들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인권이 표방하는 개인의 존엄성은 권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기도 한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사회의 연대를 통해 동시에 보장되기 때문이다. 인권문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총체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특정한 문화나 전통의 특수성이 개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문제에 개입될 때 국제인권규범과 보편성이 대립되면 온전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서로가 양립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인권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연대의 힘과 공동체의 가치를 표방한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인 연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내외적인 연대를 통해 특정 문화와 전통의 정당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민족과 당위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 사회적인 연대감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0년 남북 분단의 현실은 역사와 교육에 심각한 이질감을 가져왔다. 조정아(2007)의 언급처럼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지내온 남북은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문화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⁴⁵⁾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한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과 상황에 대한 공감의 확산보다는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45)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2007), 301쪽.

과정을 통해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분단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실천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준비과정이다. 통일교육은 북한인권의 개선과 변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의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정부와 국제기구, 국내외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상호 신뢰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 준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공동체의 문화의 형성과 확장을 유지시키며 강조하는 교육이다. 공동체 의식, 전통적인 정서적 결속, 국민적 동질성을 통해 나라 사랑과 사회 통합의 열정을 기억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개인의 인권 의식 변화와 통일교육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권은 국가의 뜻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이다. 영토는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이다. 국민은 영토에 모여 살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주인이다.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개인들의 의식과 개혁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통일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긴밀한 관계로 서로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통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아니다. 통일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실체이다. 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통일여지의 과업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통일은 조금씩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용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의 주권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인류의 평화와 질서를 저해하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권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당위성의 차원에서 북한이 보여준 인권의 참상과 억압에 대해 같은 소리를 내고 그 개선조치를 유연하게 표출하는 개혁 의지가 요청된다. 북한체제의 구조, 북한의 현실, 동북아의

정세와 세계 질서의 동향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다가올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일은 더욱더 요청되는 자세이다. 교육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한반도의 해결할 문제 가운데 하나인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므로 사회 안에서 꼭 알고 배워야 하는 가치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다. 통일교육을 통해 깨달은 바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이고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 비록 나는 개인에 불과하지만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갈망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개인에서 시작된 개혁의지의 실천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체제의 결속을 강화시켜 공동체의 일체감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작은 행동일지라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V. 맺음말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자유성과 존엄성의 최소한의 실체이다. 인권은 역사적인 경험과 발전을 통해 보편적이며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리매김했다. 국가가 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북한 주민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인권을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헌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북한은 불법적인 감금과 숙청, 정치 및 사회 모든 분야의 자유 억압, 통제 감시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전 범위에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채 독선적인 내부 통제정책을 지속하면서 체제 변화 혹은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인권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인권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식과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가용한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통일 준비 과정으로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북한의 인권과 통일교육은 다가올 통일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이 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북한인권과 함께 평화, 민주화, 이산가족,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의 책임은 우선 북한당국에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권의 보편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지혜를 모아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통일 의지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합의,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방면의 노력이 요청된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깨닫게 함으로써 북한인권 변화를 위한 실천적인 의미와 통일교육의 역할을 찾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분단이 70여 년이 되면서 남북 간에 서로 상처만 더해지는 이때 분단된 현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교육의 당위성은 높지만 실천이 부재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인권과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일 의지가 더해져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리현도,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자.

《로동신문》, 2001년 3월 1일자.

송재순·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사회과학출판사, 1985.

2. 단행본

김동한, 『北韓法研究』 제8호. 北韓法研究會, 2005.

김성윤, 『南北關係論』. 은성사, 2000.

김수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3.

박주화,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통일연구원, 2017.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북한법령연구』.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a.

_____,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 법제)』.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b.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네스, 200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7.

통일연구원 편, 『2017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7.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West Sussex: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3. 논문

강명옥,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16-24쪽.

김강녕·최이조,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3, 2003, 9-40쪽.

김국신·김연수, 「북한개방화와 인권 개선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0, 2010, 80-136쪽.

김동한, 「햇볕 정책과 북한의 인권」. 『한양법학』 21, 2007, 136-164쪽.

김부찬,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안보장이사회의 역할: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19, 2015, 49-89쪽.

김은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6, 52-54쪽.

- 김창근,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인권관: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96, 2014, 203-238쪽.
-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의 상관성 연구」. 『통일전략』 15, 2015, 39-74쪽.
- 백범석·김유리, 「북한인권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2014, 43-99쪽.
- 서보혁,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하여」. 『코리아연구원 현안 진단』 249, 2014, 25-27쪽.
- _____,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 비교 연구」. 『담론 201』 19, 2016, 61-91쪽.
- 이상신, 「북한 인권과 NGO: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변화 과정」. 『통일과 법률』 4, 2010, 76-97쪽.
- 이동윤·백종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변화의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8, 2008, 185-205쪽.
- 이무철, 「북한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현대북한연구』 14, 2011, 144-187쪽.
-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제적 대응」. 『통일전략』 5, 2005, 7-42쪽.
- _____, 「북한강제수용소 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11, 2011, 9-45쪽.
- _____, 「학교통일교육의 기본인식과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4, 2014, 161-191쪽.
- 정영철·손호철,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인권문제」. 『현대정치연구』 7, 2014, 259-283쪽.
- 조만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개혁신학의 과제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0-63쪽.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 2007, 285-306쪽.
- 한승호·이윤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세계지역 연구논총』 34, 2016, 115-128쪽.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2016, 67-69쪽.

4. 사이트

통일연구원(kinu.or.kr)

EU Official Document.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the European Union's External Relations, available at http://ec.europa.eu/comm/externalrelations/human_rights/intro/index.html.

국 문 초 록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보편적(universal)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imprescriptible or inviolable)으로,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의 갈등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고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소통의 창구를 찾아보는 데 의미를 둔다. 북한의 인권 현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논의들,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실천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북한의 인권과 통일교육은 다가올 통일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이 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북한인권과 함께 평화, 민주화, 이산가족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각 개인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권의 보편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지혜를 모아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등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방면의 노력이 요청된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교육의 당위성은 높지만 실천이 부재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인권과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일의지가 더해져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투고일 2017. 12. 20.

심사일 2018. 2. 7.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인권(human rights), 인권의 보편성(universal human rights), 우리식 인권(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통일교육(unification education)

Abstracts

A Suggestion on Unification Education in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ho, Man-joon

Human rights are inherent to human beings, They are universal, inviolable, and inalienable in any occasions. This study seeks to open a channel to discuss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push for an improvement, based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rather than controversies or ideological conflicts surrounding the issue. It will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going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issue, and effective methodologies of unification education. This paper starts from the acknowledgement of the need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when it comes to approaching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are in a time when awareness on unification is dwindling and a more practical approach to unification is need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proceed, as a means of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inforcing civil societ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 and unification education are inseparabl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lthough there seems to be no relation between the two, dealing with the two issues simultaneously will solve the variety of complicated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issues of peace establishment, democratization, separated families, and mutual trust. With this goal, we need to implement unification education faithful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bove all, continuous efforts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ividual citizens are essential in establishing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n Korea. We need to create a common ground based on the inviolability of human rights that are inherent to all human being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o seek substantial approaches, from multiple perspectives, to bring about an agreement on the issue through social solidarity. Hopefully, this paper will stimulate Korean unification by eliciting social empathy and eagerness for unification, despite the current low interest on this issue.